

의안 번호	2302	【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·역사·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7. 1.(월) 박경흠 의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7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3. 17.(월)

2. 제안이유

- 외솔 최현배선생의 고향인 병영지역의 외솔·역사·문화와 문화재를 계승, 발전, 활용하여 특성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·역사·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기본원칙,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종합계획, 연도별 시행계획(안 제5조 ~ 제6조)
- 의견수렴, 의견반영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주민추진위원회, 구성, 기능, 지원(안 제9 ~ 제12조)
- 병영성 관리·활용(안 제13조)

- 문화인력양성, 마을교육, 체험 등, 마을박물관 설치·운영(안 제14조 ~ 제16조)
- 골목길 활용 등, 빈집수리·운영(안 제17조 ~ 안 제18조)
- 마을문화유산안내소 등, 외솔학당 설치·운영(안 제19조 ~ 안 제20조)
- 도시재생 활용, 공유재산의 관리(안 제21조 ~ 제22조)
- 시행규칙(안 제23조)

4. 근거법규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2조,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병영지역의 외솔·역사·문화와 문화재를 계승, 발전, 활용하여 특성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·역사·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나 전체적 법규의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어법과 주술 관계 정비 등 전반적으로 부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“청구권자” 라 한다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“지방의회” 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 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 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
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

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